

가

APPRAISAL REPORT

| | |
|---|------------------|
| | (2025 50894) |
| | (4) |
| 가 | ()18-250904-302 |

| | | |
|------|---|---------|
| 가 | 가 | (|
| 가 |) | , (改作), |
| (轉載) | 가 | . |



가 . 가

가

() 가

| | | |
|-----|---|-----|
| 가 | 가 | 가 |
| 가 | | () |
| () | 가 | () |

| | | | |
|-----|-----------------|------------|-----------------------|
| 가 | (\11,253,000.-) | | |
| | | 가 | |
| | - | | 4 |
| () | (2025 50894) | 가 | 가 |
| | | 가 | - |
| | | | |
| | | 2025.10.23 | 2025.10.23 2025.10.24 |

| | | | | | |
|---|---------|----------------------|---|-------------------|--------------------|
| 가 | (公簿)() | | 가 | | |
| | | (m ²) | | (m ²) | 가 |
| | | 330 99x--- 990 | | 33 | 341,000 11,253,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53,000.- |

| | | |
|---|---|-----|
| 가 | 가 | 가 |
| 가 | | () |
| : | 가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 소재 "신동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춘천지방법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2. 감정평가 대상 물건

■ 토지

| 기호 | 소재지 지번 | 공부면적 (㎡) | 사정면적 (㎡) | 지목 | 도로조건 | 형상 지세 | 이용상황 | 용도지역 | 개별지가 (원/㎡) (2025) | 비고 |
|----|--------------|----------------------|-------------|----|------|-----------|------|------|-------------------------|-----------|
| 1 | 신동 902-28 | 99 × 330 / 990 | 33 | 전 | 맹지 | 세장형 평지 | 주거나지 | 2종일주 | 325,200 | 박인숙 지분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실시기간

■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10월 23일로 하였습니다.

■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5년 10월 23일 입니다.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감정평가조건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5. 기타 참고사항

■ 없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Ⅱ.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절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본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Ⅲ. 감정평가액 산출

1. 토지의 감정평가액 산출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산식 :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비교 × 개별요인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

1) 비교표준지의 선정 (2025.01.01기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 구 분 | 소재지 | 면적 (㎡) | 지목 | 용도지역 | 이용상황 | 도로조건 | 형상 지세 | 공시지가 (원/㎡) |
|-----|-----------|--------|----|------|------|-------|--------|------------|
| 가 | 사농동 242-2 | 522 | 대 | 2종일주 | 단독주택 | 세로(가) | 가장형 평지 | 346,800 |

2) 시점수정

본건 시점수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으며, 기준시점 당시 해당월의 지가변동률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 최종 발표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적용 하였습니다.

| 기 간 | 지가변동률(%) | 산 식 |
|---|--------------------|--|
| 2025.01.01 ~ 2025.10.2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주거지역) | 1.116 (1.01116) | $(1 + 0.00959) \times (1 + 0.00091 \times 53/31)$ = 1.01116 |

3)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동등합니다.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개별요인 비교

■ 주택지대

[본건 기호(1) / 표준지 기호(가)]

| 조 건 | 항 목 | 세 항 목 | 비 교 치 | 비 고 |
|-----------------|-----------------|---------------------------------------|--------------|----------------------------|
| 가로 조건 |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 0.70 |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등에서 열세합니다. |
| 접근 조건 | 교통시설과의 거리 |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 1.00 | 대체로 유사합니다 |
| | 상가와의 접근성 | 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등 | | |
| |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 | |
| 환경 조건 | 일조 등 자연환경 | 일조, 통풍,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 1.00 | 대체로 유사합니다 |
| | 인근환경 |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인근 토지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등 | | |
| |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 | |
| | 위험 및 혐오시설 등 |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등 | | |
| 획지 조건 | 면적, 접면 너비, 형상 등 | 면적, 접면너비, 형상, 깊이 등 | 1.00 | 대체로 유사합니다 |
| | 방위, 고저 등 | 방위, 고저, 경사지 등 | | |
| | 접면도로 상태 |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 | |
| 행정적 조건 | 행정상의 규제정도 |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 1.00 | 대체로 유사합니다 |
| | | 입체이용 제한 등 | | |
| 기타 조건 | 기타 | 장래의 동향, 기타 | 1.00 | 대체로 유사합니다 |
| 개별요인 비교치 | | | 0.7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그 밖의 요인의 보정

① 그 밖의 요인 보정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대법원판례 " 2003다38207판결(2004.5.14선고) ", " 2002두5054 (2003.7.25선고)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교통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인근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지가수준 및 지가동향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하였습니다.

$$\text{산식} = \frac{(\text{사례기준 표준지 평가}) \text{ 사례가격}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표준지공시지가 시점수정}) \text{ 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② 그 밖의 요인 보정에 관한 자료

▷ 평가사례

| 기호 | 소재지 | 면적 (㎡) | 지목 | 용도지역 이용상황 | 형 상 도로조건 | 기준시점 | 평가 목적 | 사례단가(원/㎡) (당해개별지가 (원/㎡)) |
|----|---------------|--------|----|--------------|--------------|------------|-------|-----------------------------|
| 1 | 신동 ○○○-○ | 145 | 대 | 2종일주 업무용 | 사다리 세로(불) | 2022.09.16 | 법원경매 | 500,000 (428,700) |
| 2 | 사농동 ○○○-○○ | 90 | 전 | 2종일주 주거나지 | 가장형 맹지 | 2024.08.28 | 법원경매 | 315,000 (308,700)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번은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출처: 감정평가정보(KAPA HUB PLUS)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거래사례

| 기호 | 소재지 | 면적 (m ²) | 지목 | 용도지역 이용상황 | 형 상 도로조건 | 거래시점 | 실거래가액 (원) | 사례단가(원/m ²) (당해개별지가 원/m ²) |
|-----|---|----------------------|----|--------------|-------------|------------|--------------|--|
| A | 사농동 ○○○-○○ | 89 | 전 | 2종일주 주거나지 | 세장형 맹지 | 2025.03.14 | 32,040,000 | 360,000 (264,600) |
| 비 고 | - 토지단가 : 32,040,000원 / 89m ² ≒ 360,000원/m ² | | | | | | | |
| B | 신동 ○○○-○○ | 225 | 전 | 2종일주 주거나지 | 세장형 중로각지 | 2021.04.27 | 170,000,000 | 755,000 (535,600) |
| 비 고 | - 토지단가 : 170,000,000원 / 225m ² ≒ 755,000원/m ² | | | | | | |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번은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 인근 지가수준

| 위 치 | 도로조건 | 지가수준 | 비 고 |
|-------|------|---------------------------------|-----|
| 본건 인근 | 맹지 | 320,000~330,000원/m ² | - |

위치, 형상, 접근성, 환경 등에 따라 지가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경매시장 추이(1년간 평균 낙찰가율)

(인포케어, www.infocare.co.kr)

| 지역통계 | 강원 | | | 춘천시 | | | 신동 | | |
|-------|----------|-----------|----------|----------|-----------|----------|----------|-----------|----------|
| | 낙찰가율 (%) | 낙찰율 평균(%) | 낙찰건수 (건) | 낙찰가율 (%) | 낙찰율 평균(%) | 낙찰건수 (건) | 낙찰가율 (%) | 낙찰율 평균(%) | 낙찰건수 (건) |
| 토지/대지 | 56.96 | 66.34 | 94 | 65.60 | 61.52 | 11 | 0 | 0 | 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③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출 및 결정

인근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자가수준, 경매시장 추이, 평가목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본건 평가시 적용할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합니다.

■ 비교표준지 (가)

| 사례기준 표준지 평가 | 사례가격 ^{※1} | 시점수정 ^{※2} | 지역요인 ^{※3} | 개별요인 ^{※4} | 산출단가(A) (원/㎡) | 격차율 (A/B) | 보정치 결정 |
|---------------------|--------------------|--------------------|--------------------|--------------------|------------------|--------------|-----------|
| | 500,000 | 1.02837 | 1.000 | 0.950 | 488,476 | | |
|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수정 |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산출단가(B) (원/㎡) | 1.392 | 1.39 |
| | 346,800 | 1.01116 | - | - | 350,670 | | |

※1 사례선택

표준지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이용상황 등에 있어 비교가능성이 높은 상기 "평가사례(1)"을 비교사례로 선택하였습니다.

※2 시점수정

| 기 간 | 지가변동률(%) | 시점수정치 | 비 고 |
|---|----------|---------|------------------|
| 2022.09.16 ~ 2025.10.2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주거지역) | 2.837 | 1.02837 | 2025년 8월 연장적용 |

※3 지역요인 비교

비교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동등합니다. (1.000)

※4 개별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치 (주택지대) | | | | | | 격차율 |
|-----------------|------|--------|------|------|------|-------|
| 가로 | 접근 | 환경(자연) | 획지 | 행정 | 기타 | |
| 0.95 | 1.00 | 1.00 | 1.00 | 1.00 | 1.00 | 0.950 |

가로조건(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등)에서 열세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단가 결정

| 기 호 | 공시지가 (원/㎡) | 시점 수정 | 지역 요인 | 개별 요인 | 그 밖의 요인 | 산출단가 (원/㎡) | 적용단가 (원/㎡) | 비 고 |
|-----|---------------|----------|----------|----------|------------|---------------|---------------|-----|
| 1 | 346,800 | 1.01116 | 1.000 | 0.700 | 1.39 | 341,202 | 341,000 | - |

7)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 기 호 | 면 적(㎡) | 단 가(원/㎡) | 시산가액(원) | 비 고 |
|------------|-----------|----------|-------------------|-----|
| 1 | 33 | 341,000 | 11,253,000 | - |
| 합 계 | 33 | - | 11,253,000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합리성 검토

산식 : 거래사례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비교

1)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①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및 사유

본건과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인 상기 "거래사례(A)"를 "기호(1)"의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② 거래사례 선정 내역

| 기호 | 소재지 | 면적 (㎡) | 지목 | 용도지역 이용상황 | 형 상 도로조건 | 거래시점 | 실거래가액 (원) | 사례단가(원/㎡) (당해개별지가 (원/㎡)) |
|-----|---|--------|----|--------------|-------------|------------|--------------|--------------------------------|
| A | 사능동 ○○○-○○ | 89 | 전 | 2종일주 주거나지 | 세장형 맹지 | 2025.03.14 | 32,040,000 | 360,000 (264,600) |
| 비 고 | - 토지단가 : 32,040,000원 / 89㎡ ≒ 360,000원/㎡ | | | | | | |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번은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액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수준으로 사례가액을 정상화하는 작업으로서, 상기 사례의 경우 사정보정요인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00)

3) 시점수정

| 기 간 | 지가변동률(%) | 시점수정치 | 비 고 |
|---|----------|---------|------------------|
| 2025.03.14 ~ 2025.10.2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주거지역) | 0.804 | 1.00804 | 2025년 8월 연장적용 |

4) 가치형성요인 비교

① 지역요인 비교

사례와 본건 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동등합니다.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② 개별요인 비교

■ 주택지대

[본건 기호(1) / 사례 기호(A)]

| 조 건 | 항 목 | 세 항 목 | 비 교 치 | 비 고 |
|----------|-----------------|---------------------------------------|-------|--------------------------------|
| 가로 조건 |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 1.00 | 대체로 유사합니다 |
| 접근 조건 | 교통시설과의 거리 |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 0.95 | 상가 및 공공,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열세합니다. |
| | 상가와와의 접근성 | 인근 상가와와의 거리 및 편의성 등 | | |
| |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 | |
| 환경 조건 | 일조 등 자연환경 | 일조, 통풍,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 1.00 | 대체로 유사합니다 |
| | 인근환경 |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인근 토지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등 | | |
| |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 | |
| | 위험 및 혐오시설 등 |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등 | | |
| 획지 조건 | 면적, 접면 너비, 형상 등 | 면적, 접면너비, 형상, 깊이 등 | 1.00 | 대체로 유사합니다 |
| | 방위, 고저 등 | 방위, 고저, 경사지 등 | | |
| | 접면도로 상태 |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 | |
| 행정적 조건 | 행정상의 규제정도 |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 1.00 | 대체로 유사합니다 |
| | | 입체이용 제한 등 | | |
| 기타 조건 | 기타 | 장래의 동향, 기타 | 1.00 | 대체로 유사합니다 |
| 개별요인 비교치 | | | 0.95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단가 결정

| 기 호 | 사례단가 (원/m ²) | 사정 보정 | 시점 수정 | 가치형성요인 | | 산출단가 (원/m ²) | 적용단가 (원/m ²) | 비고 |
|-----|-----------------------------|----------|----------|--------|-------|-----------------------------|-----------------------------|----|
| | | |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 | |
| 1 | 360,000 | 1.000 | 1.00804 | 1.000 | 0.950 | 344,749 | 345,000 | - |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 기 호 | 면적(m ²) | 단가(원/m ²) | 시산가액(원) | 비 고 |
|-----|---------------------|-----------------------|------------|-----|
| 1 | 33 | 345,000 | 11,385,000 | - |
| 합 계 | 33 | - | 11,385,000 | - |

7) 합리성 검토

| | |
|------------------|-------------|
|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 11,253,000원 |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11,385,000원 |

상기와 같이 산출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상호간에 유사하여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해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구 분 | 감정평가액(원) | 비 고 |
|-----|------------|-----|
| 토 지 | 11,253,000 | - |

가

: 1

| | | | ? | | (㎡) | | 가 | | |
|---|--|--------|---|---|------------------------|-----|---------|---------------|--|
| | | | | | | | 가 | | |
| 1 | | 902-28 | | 2 | 330 99 X --- 990 | 33 | 341,000 | 11,253,000 | |
| | | | | | 990 | 330 | | | |
| | | | | | | | | \11,253,000.- | |

가

- | | | |
|----|----|-----|
| 1. | 2. | 3. |
| 4. | 5. | 6. |
| 7. | 8.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 소재 '신동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으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세장형 평지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UQA122),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가

- | | | |
|----|----|-----|
| 1. | 2. | 3. |
| 4. | 5. | 6. |
| 7. | 8.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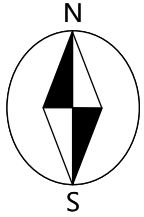
7. 공부와의 차이

귀 제시목록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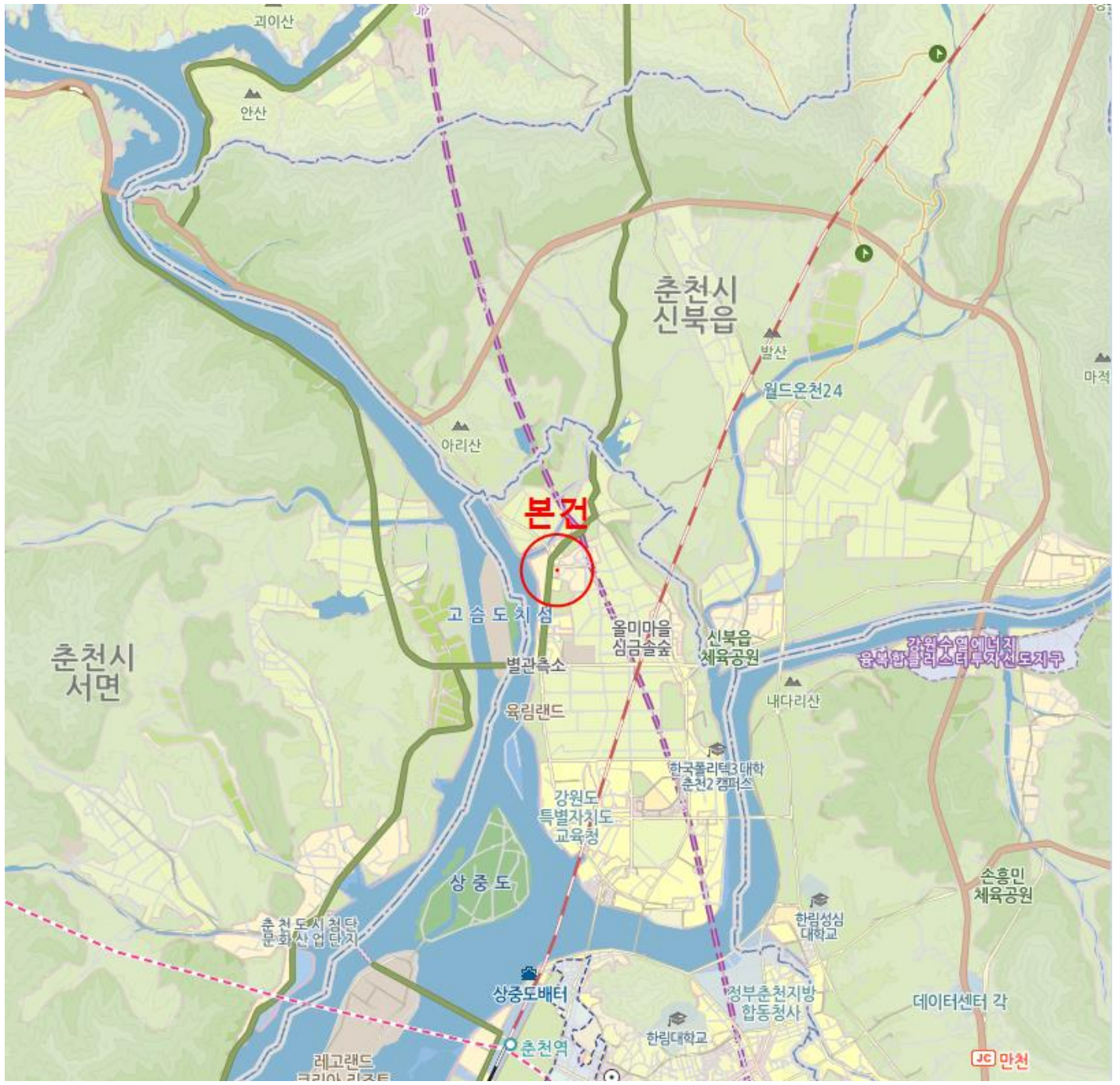
-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광역 위치도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 902-28



범례



본건



표준지공시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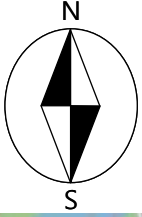


평가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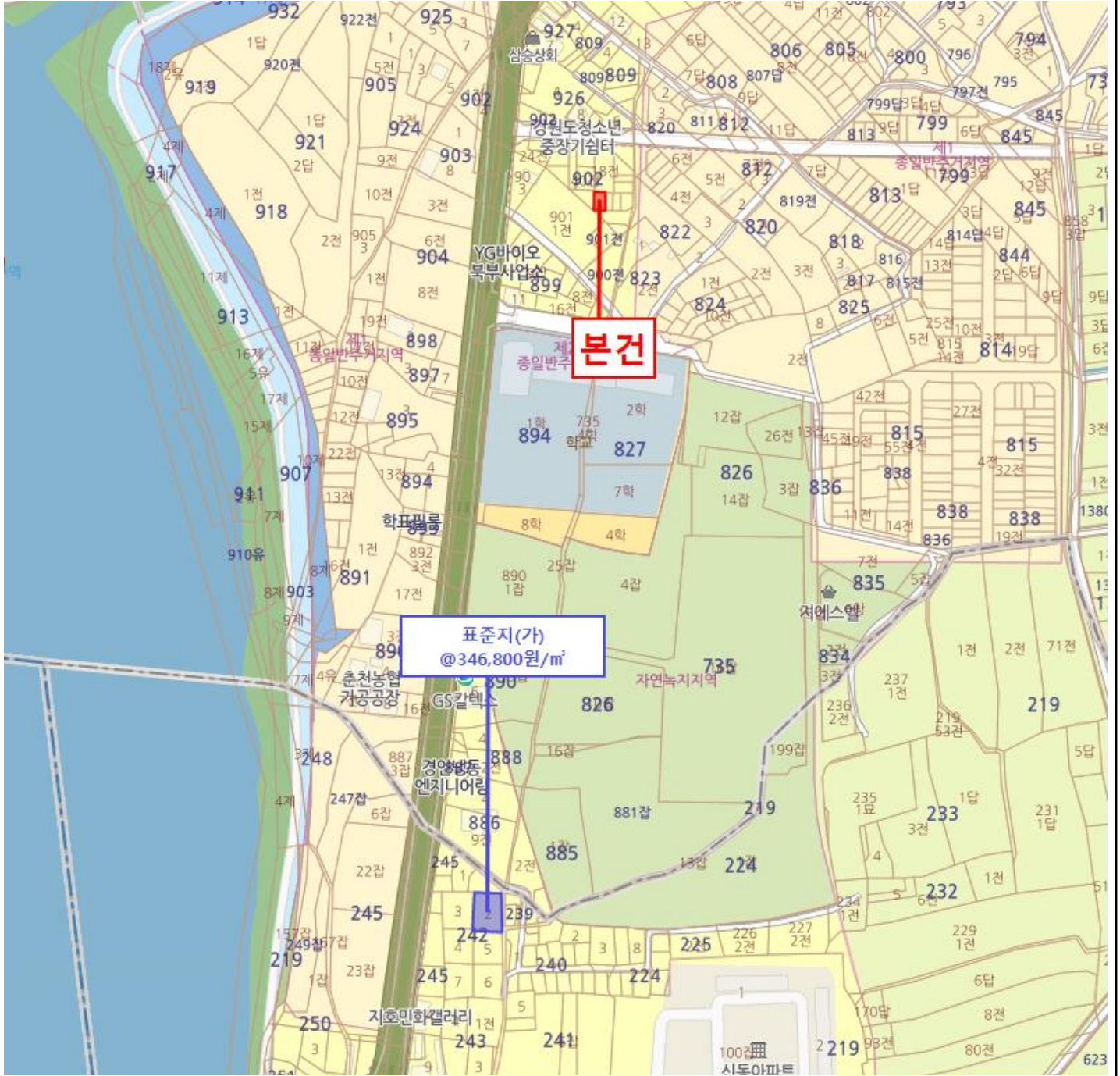
거래사례

상세 위치도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 902-28



범례



본건



표준지공시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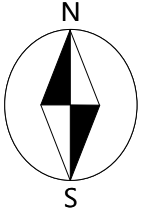


평가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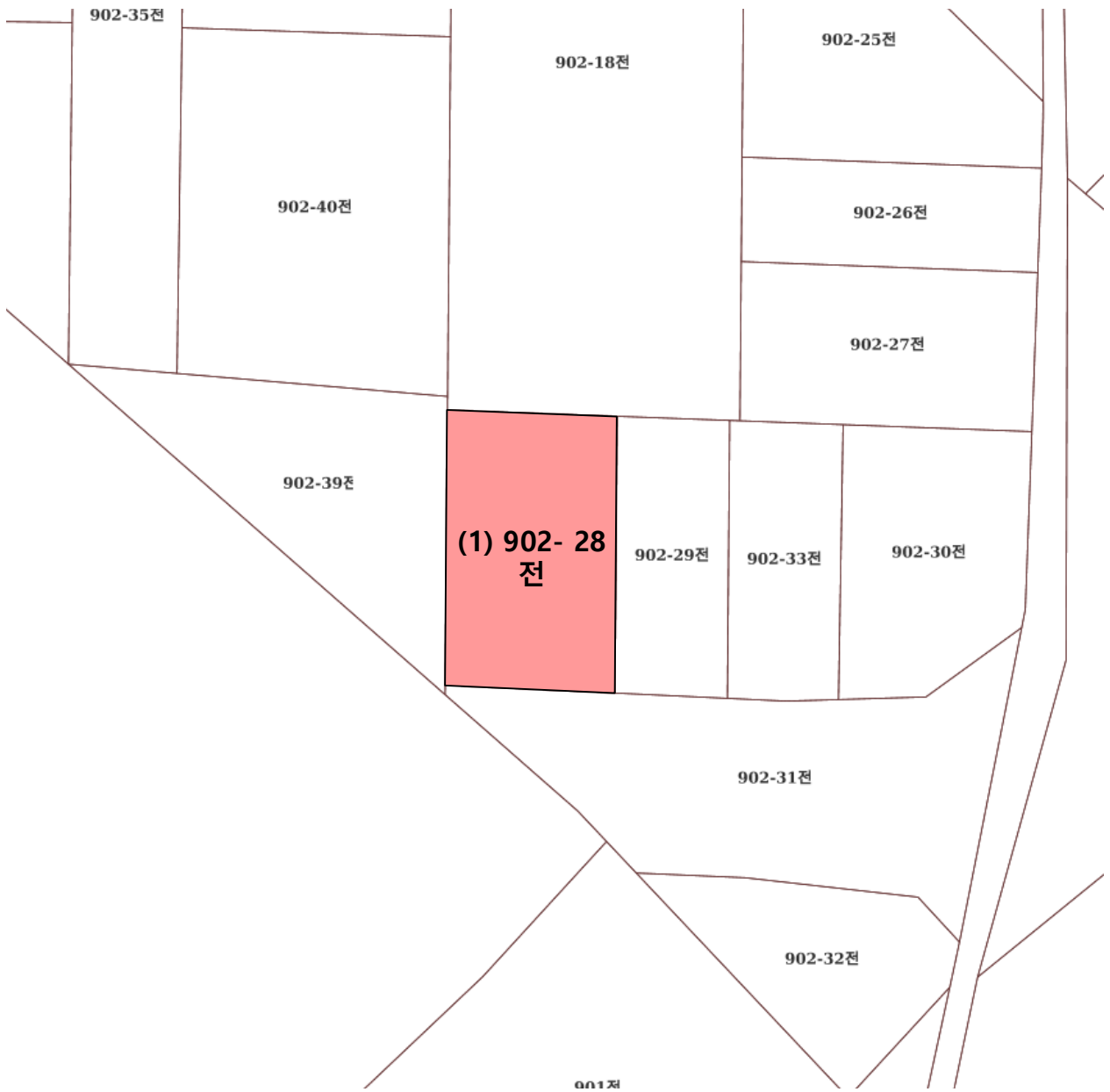


거래사례

지적개황도



S : NON-SCALE



| | | | | |
|----------------|--|---|--|--|
| 단 례 | 평가대상토지 | 평가건물1층 | 평가건물2층 | 평가건물3층이상 |
| | 제 시 외 | 평가제외건물 | 도로 | 계획 도로 선 용도지 구분선 |



【 】



【 (1) 】